

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[생애최초 특별공급]

- ※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2. 10. 07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및 '상세' 로 발급
- 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■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 서류 제출 일정 안내

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		제출 장소
당첨자	'22. 10. 30.(일) ~ 11. 02(수) 오전 10시 ~ 오후 5시	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2-8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건분주택 T.1533-0525
예비당첨자		

■ 구비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청약자	신분증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· '본인'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	주민등록표등본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주민등록표초본	·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 발급
		가족관계증명서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	출입국사실증명원	·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, 기록대조일(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10.07)
		혼인관계증명서	· 혼인신고일 확인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)
청약자 및 세대원	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	·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	
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(청약신청자)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제출 '상세' 로 발급	
추가서류 (해당자)	추첨제 청약자 및 세대원	소득증빙서류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) 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득현황 ·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	부동산 소유현황	· 상가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
		등기사항전부증명서	· 상가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,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세[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] → "이하 국토교통부" *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) 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: 국토교통부 → 주택 공시가격,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*오피스텔, 상가 : [건물번호]주택번호 → 조회/발급 → 기타조회 → 기준시가조회 →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[토지번호]국토교통부 → 개별공시지가 *토지 : 국토교통부 → 개별공시지가
		공시가격 증명 서류	·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, 재산세 납부내역(정부24 또는 인근주민센터)과 상가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
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분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	가족관계증명서	·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'상세'로 발급
	직계존속	주민등록초본	·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 로 발급)
		혼인관계증명서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'상세' 로 발급
	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·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 *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. *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청약자 또는 배우자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· 임신의 경우(건분주택 비치)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의 경우	
청약자 및 세대원	비사업자확인각서	·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작성(건분주택 비치)	
제3자 대리인 신청인	청약자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· '본인'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.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		위임장	·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 (건분주택에 비치)
	대리인	신분증, 도장(서명)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해당주택	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· '소형·저가주택 등' 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당첨사실 소명자료	·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명서류

구분	발급대상	제출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단신부임	청약자	해외체류관련 증명 서류	·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명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배우자 포함 세대원	· 배우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청약자 및 배우자 등)에 등재된 세대원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"Y" 설정하여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, 기록대조일(출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.10.07)
	청약자 및 세대원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·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기준 관련안내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(2022년 적용)

공급유형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(2022년 적용)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130% 이하	~8,071,614원	~9,361,052원	~9,523,894원	~10,113,773원	~10,703,651원	~11,293,530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130% 초과 ~160% 이하	8,071,615원 ~9,934,294원	9,361,053원 ~11,521,294원	9,523,895원 ~11,721,715원	10,113,774원 ~12,447,720원	10,703,652원 ~13,173,725원	11,293,531원 ~13,899,730원
추첨제 (30%)	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	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
	1인 가구	160%이하 160%초과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~9,934,294원 9,934,295원~	~11,521,294원 11,521,295원~	~11,721,715원 11,721,716원~	~12,447,720원 12,447,721원~	~13,173,725원 13,173,726원~	~13,899,730원 13,899,731원~

■ 소득증빙 제출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	①② 해당직장 ②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*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* 해당직장
자영업자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또는 소득금액증명(원본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* 해당직장
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*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	①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(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) 또는 ②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법인사업자	신규사업자 등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② 사업자등록증(사본)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	* 세무서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(견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* 견본주택	

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.31억원 이하	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>주택 외</td> <td>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
주택 외	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,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종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-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											

■ 자산보유 확인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'부동산 소유 현황' 이 있는 경우	필수	- 부동산 소유 현황(세대원 각각 발급)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*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- 등기소(대법원인터넷등기소 포함) - 행정복지센터
	해당자	- 공동(개별)주택공시가격 확인원(*소유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주택인 경우) - 개별공시지가 확인원(*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,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인 경우) -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(*위택스 → 지방세정보 → 시가표준액 조회) 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	- 행정복지센터 - 위택스
'부동산 소유 현황' 이 없는 경우	필수	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'부동산 소유 현황'조회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	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